국립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실대상자 선발 지침

(1991. 11. 1. 제정) (2004. 11. 1. 개정) (2006. 6. 5. 개정)
(2008. 12. 19. 개정) (2010. 2. 11. 개정) (2013. 1. 31. 개정)
(2013. 11. 14. 개정) (2014. 7. 30. 개정) (2016. 12. 8. 전부개정)
(2018. 4. 26. 개정) (2018. 9. 14. 개정) (2018. 10. 8. 개정)
(2019. 3. 26. 개정) (2020. 02. 27. 개정) (2020. 10. 30. 개정)
(2021. 12. 1. 개정) (2022. 12. 1. 개정) (2024. 11. 27. 개정)
(2025. 6. 10.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제4장에 따른 학생생활관(분관) 입실대상자 선발과 입실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학생생활관 입실대상자 선발 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관생이란 학기 중 개관기간에만 학생생활관(분관)(이하 ‘생활관(분관)’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간거주관생이란 학기 중 개관과 방학 중 개관기간 동안 동일한 생활관(분관)과 호실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입실신청 공고) 학생생활관(분관)장(이하 ‘생활관(분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입실신청일 전일까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입실신청대상
2. 입실(신청) 제한 사유
3. 입실신청 일정, 방법, 제출서류
4. 선발기준, 선발인원, 선발방법
5. 입실기간, 생활관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입실신청 대상) 생활관(분관) 입실신청 대상은 신·편입생, 재학생, 복학예정자, 재입학자로 한다.

제5조(입실신청 방법) 생활관(분관) 입실을 희망하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과 방법에 따라 입실신청을 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선발 시기) 생활관(분관) 입실대상자 선발 시기는 매 학기 개강 전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결원에 대한 충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선발할 수

있다.

제7조(배정 비율) 생활관(분관) 입실대상자의 학년별 최초 배정 비율은 생활관(분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선발 인원) 생활관(분관) 입실대상자의 대상자별 선발인원은 생활관(분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우선입실대상자 선발) ① 생활관(분관) 입실신청자 중 [별표1]의 '우선입실대상자'를 먼저 선발한다. 단, 해당 증빙서류를 입실신청기간 내 제출하기 않거나 입실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입실신청기간 내 확인된(수석합격자, 장학생 등) 내용만 적용한다.

② 생활관(분관) 잔여석 보다 우선입실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1. 생활관(분관)에 우선 입실이 필요하다고 생활관(분관)장이 인정한 사람
2. 장애인
3. 외국인
4. 제13조의 동점자 선발기준 준용

제10조(일반입실대상자 선발) ① 신입생의 경우 단과대학별 선발기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② 재학생의 경우 학년별·단과대학별 선발기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컴퓨터 추첨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편입생
2. 대학원생
3. 추가 입실대상자
4. 그 밖에 생활관(분관)장이 인정한 경우

제11조(추가입실대상자 선발) ① 생활관(분관) 입실대상자의 입실포기, 신청인원 미달 등으로 발생한 여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추가입실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선발방법은 생활관(분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신·편입생의 경우 신규 학번이 부여된 날 이후부터는 재학생으로 간주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12조(가산점 부여) 생활관(분관) 입실신청자 중 [별표2]의 '가산점부여대상자'에게는 누적성적 평점평균점수 또는 입시성적 총점의 10%를 가산하되,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단, 해당 증빙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10조제3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동점자 선발기준) 생활관(분관) 입실신청자 중 선발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1.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
2. 연소자(학사정보 생년월일 기준)
3. 컴퓨터 추첨

제14조(선발기준 점수) 생활관(분관) 입실대상자를 선발할 때 적용하는 선발기준 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생: 누적성적 평점평균 점수와 가산점을 합한 점수
2. 신입생: 입시성적 총점(1,000점 만점 기준 점수)와 가산점을 합한 점수

제15조(선발결과 공지) 생활관(분관)장은 입실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결과를 생활관비 납부 전까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생활관비 납부) 생활관(분관) 입실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정해진 기간에 생활관비를 납부해야 하며, 생활관비를 미납할 경우 선발을 취소한다.

제17조(생활관 배정) 생활관(분관) 입실대상자의 생활관 건물 배정은 입실 신청 시 희망한 생활관 건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생활관 건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활관(분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건강검진서 제출) 생활관(분관) 입실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항목을 검진 받아, 그 결과를 입실 전까지 생활관(분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건강검진서 유효기간은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1. 결핵
2. 그 밖에 집단발생 또는 유행이 우려되는 감염병

제19조(개인정보 관리) ① 생활관(분관) 입실신청자는 정해진 ‘개인정보(생체정보 포함) 수집 및 이용 동의서’와 ‘입실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하며, 입실 관련 서류제출 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운 상태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분관)장은 입실신청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제출서류를 선발절차 완료시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③ 생활관(분관)장은 입실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에 한하여 활용하되,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입실 신청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보유기간 만료 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20조(입실자격 제한) ① 생활관(분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생활관(분관) 입실신청을 제한하거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고, 정해진 입실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 생활관(분관)장으로부터 퇴실 처분을 받고, 정해진 입실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정해진 기간에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4. 감염병 환자 등 의사가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5.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주캠퍼스: 충남 공주시(동)인 사람(단, 공주시 인구늘리기 정책에 따라 입학 후 공주시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제외)
   천안캠퍼스: 충남 천안시(동)인 사람(단, 천안시 인구늘리기 정책에 따라 입학 후 천안시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제외)
   예산캠퍼스: 충남 예산읍인 사람(단, 예산군 인구늘리기 정책에 따라 입학 후 예산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제외)
6. 정해진 기간 내 생활관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유예 신청자 중 개관 이후 입실을 포기하는 사람
7. 개인적인 사유(자취, 통학 등)으로 개관일 이후 개관일수 3/4선 이전에 퇴실하는 사람(단,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등 학과 실습으로 인해 퇴실한 경우 제외)
8. 휴학, 퇴학, 수료, 졸업, 제적 등 학적상 재학생이 아닌 사람
9. 입실신청 시 정보를(주소, 증빙서류 등) 허위로 기재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관(분관)장이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생활관(분관) 입실신청 인원이 수용가능 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6.12.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학년도 생활관(분관) 입실대상자 선발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 준용)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및 「국립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생수칙」을 준용한다.

제3조(기존 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국립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생 선발 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18. 4.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학년도 생활관(분관) 입실대상자 선발부터 적용한

다.
제2조(다른 규정 준용)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및 「국립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생수칙」을 준용한다.

부 칙(2018. 9. 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학년도 생활관(분관) 입실대상자 선발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 준용)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및 「국립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생수칙」을 준용한다.

부 칙(2019. 3.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학년도 생활관(분관) 입실대상자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1.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학년도 생활관(분관) 입실대상자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6.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우선입실대상자

1. 신 · 편입생

연번	대상자	수혜조건	확인방법
1	장애인 본인		장애인증 또는 복지카드
2	외국인(재외국민, 한국어연수생 포함) 본인		학사정보시스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3	장애인 룸메이트 도우미 추천자		해당 부서 추천 공문
4	새터민 및 자녀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또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5	국가보훈대상자 가.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외손자녀 포함) 나.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단, 참전유공자 제외) 다. 6. 18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라. 지원 순직·공상 군경(공무원) 및 그 자녀 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 대상자) 및 그 자녀 바. 5. 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사.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아.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국가유공자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및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7	단과대학 수석입학자		해당 부서 추천 공문
8	학과 수석입학자		해당 부서 추천 공문
9	자율전공 입학자		학사 정보
10	체육특기자		해당 부서 추천 공문
11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 확인서
12	그 밖에 생활관 입실이 필요하다고 생활관(분관)장이 인정한 자		해당 부서 추천 공문

2. 재학생

연번	대상자	수혜조건	확인방법
1	장애인 본인		장애인증 또는 복지카드
2	외국인(재외국민, 한국어연수생 포함) 본인		학사정보시스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3	장애인 룸메이트 도우미 추천자		해당 부서 추천 공문
4	새터민 및 자녀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또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5	국가보훈대상자 가.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외손자녀 포함) 나.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단, 참전유공자 제외) 다. 6. 18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라. 지원 순직·공상 군경(공무원) 및 그 자녀 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 대상자) 및 그 자녀 바. 5. 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사.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아.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국가유공자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및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7	글로벌리더 장학생	글로벌리더 장학금 수혜자에 한함	해당 부서 추천 공문
8	전체 수석입학자	직전학기성적 3.5이상	해당 부서 추천 공문
9	단과대학/자율전공 수석입학자	직전학기성적 3.5이상 <2년(입학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함>	해당 부서 추천 공문
10	학과 수석입학자	직전학기성적 3.5이상 <입학연도에 한함>	해당 부서 추천 공문
11	관생 자치회 임원		학생생활관
12	체육특기자		해당 부서 추천 공문
13	진영원생	재학생에 한함	해당 부서 추천 공문
14	학군단 후보생	학군단장 추천자 10명 이내	해당 부서 추천 공문
15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 확인서
16	그 밖에 생활관 입실이 필요하다고 생활관(분관)장이 인정한 자		해당 부서 추천 공문

[별표2]

가산점부여대상자

1. 신입생

연번	대상자	확인방법
1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중 1부와 가족관계증명서
2	한 가정 두 자녀 이상 국립공주대 재학생	재학(휴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그 밖에 가산점부여가 필요하다고 생활관(분관)장이 인정한 자	해당부서 추천공문

2. 재학생

연번	대상자	확인방법
1	홍보도우미	해당부서 추천공문
2	학우보호도우미, 학교안전지킴이	해당부서 추천공문
3	장애학우도우미	해당부서 추천공문
4	대학신문방송사 기자 및 국원	해당부서 추천공문
5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중 1부와 가족관계증명서
6	VALUE UP 인재 마일리지 고득점자 중 학년별 VALUE UP 인재 마일리지 상위 5% 이내	통합정보시스템
7	한 가정 두 자녀 이상 국립공주대 재학생	재학(휴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8	그 밖에 가산점부여가 필요하다고 생활관(분관)장이 인정한 자	해당부서 추천공문